

May 25, 2020

Legal Update

인도네시아 연간재무보고서에 관한 새로운 상무부장관령 소개

연간재무보고서(LAPORAN KEUANGAN TAHUNAN PERUSAHAAN; LKTP; Annual Financial Report)에 관한 새로운 규정의 신설 및 기존 규정의 폐지

인도네시아 상무부는 2020. 3. 19. 「2020년 제25호 연간재무보고서에 관한 상무부 장관령」(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25 TAHUN 2020 TENTANG LAPORAN KEUANGAN TAHUNAN PERUSAHAAN, 이하 “Permen Perdagangan 25/2020”)을 신설 제정하였습니다. 이 규정이 제정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.

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인허가 제도와 관련하여, 인도네시아 투자기본법(UU 25/2007) 제25조의 규정 등에 따라 소위 ‘OSS(Online Single Submission) 행정부령’이라고 불리우는 「2018년 제24호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통합된 사업허가에 관한 행정부령」을 2018년에 신설한 바 있습니다. 위 OSS 제도 도입에 따른 각종 제도적 변화에 발 맞추어 기존 규정의 내용을 OSS 제도 도입과

일치시키고자 연간재무보고서에 관한 2002년도 규정을 대대적으로 정비한 것입니다.

그 결과 기존 연간재무보고서의 제출 등에 관한 근거규정으로서 기능하던 「2002년 제121호 연간재무보고서의 제출 규정에 관한 상무부 장관 결정사항」(KEPUTUSAN MENTERI PERINDUSTRIAN DAN PERDAGANGA NREPUBLIK INDONESIA NOMOR : 121/MPP/Kep/2/2002 TENTANG KETENTUAN PENYAMPAIAN LAPORAN KEUANGAN TAHUNAN PERUSAHAAN, 이하 “2002년 규정”)은 폐지되어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고(Permen Perdagangan 25/2020 제23조), 연간재무보고서의 제출 의무를 부담하는 기업, 연간재무보고서의 제출 절차, 방법 등에 관한 큰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.

연간재무보고서에 관한 새로운 규정의 주요 내용

연간재무보고서 제출 등에 관한 Permen Perdagangan 25/2020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[Permen Perdagangan 25/2020 주요 내용]

주요 내용		비고
연간재무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담하는 대상 회사 및 그 기준	• 주식회사(Perseroan Terbatas) 주식회사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는 모두 해당함; - 상장된 회사 - 공모된 자금의 배포, 관리 등과 관련된 사업 분야의 회사 - 채무의 승인과 관련된 서면을 발급하는 회사 - 자산의 규모가 최소 250억 루피아 이상인 회사 - 감사의 목적으로 은행에 연간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회사 • 외국회사(Perusahaan asing) - 인도네시아에 주소를 두고 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지점의 형태, 보조 판매점의 형태, 자회사의 형태로 또는 에이전트 및 당자를 두고 사업을 하는 형태를 모두 포함함 • 국영회사(PERSERO) • 공공서비스기업(PERUM) • 지방공기업	Permen Perdagangan 25/2020 제1조, 제3조 제1항 2002년 규정에서는 연간재무보고서의 제출 의무를 부담하는 회사의 기준이 다소 불명확하였고, 지점, 지사 등의 형태로 사업활동을 하는 외국회사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였으나, Permen Perdagangan 25/2020에서는 그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변경함

연간재무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	• 대차대조표 또는 그 명칭과 관계없이 재무상태를 설명하는 보고서 • 손익계산서 또는 그 명칭과 관계없이 손익의 성과를 설명하는 보고서 • 자본변동표 • 현금흐름표 • 은행대출 등을 포함하여 모든 채권, 채무에 대한 사항이 공개되도록 기재하여야 함	Permen Perdagangan 25/2020 제4조
연간재무보고서에 대한 감사 및 승인	• 회계감사 반드시 공인회계사에 의한 사전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 • 주주총회 또는 회사 내 기관의 승인 제반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연간재무보고서를 승인할 권한을 가진 주주총회 또는 회사 내 기관의 승인을 반드시 얻어야 함	Permen Perdagangan 25/2020 제5조
연간재무보고서 제출 시점	• 반드시 기업회계연도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함	Permen Perdagangan 25/2020 제6조, 2002년 규정과 동일
새로운 연간재무보고서 제출 방법과 시스템	• 회사는 반드시 사업자식별번호(NIB)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• 회사는 OSS(Online Single Submission) 시스템에 통합된 ‘사업허가정보시스템’(SIPT)을 통하여 연간재무보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• 연간보고서가 제출되는 경우, 5 영업일 이내에 ‘연간재무보고서 제출영수증’(STP-LKTP) 발급 • 다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. 9. 19.까지는 연간재무보고서를 기존과 같이 물리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것은 허용되고 유효함 • 회사가 다른 규제기관, 재무부 장관, 국영기업부 장관 등에 연간재무보고서를 제출한 경우, 온라인으로 상무부에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그 제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됨 ➡ 이 경우, 회사는 ‘사업허가정보시스템’(SIPT)을 통하여 관련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‘연간재무보고서 제출영수증’(STP-LKTP) 발급받을 수 있음	Permen Perdagangan 25/2020 제7조 내지 제11조, 제22조, 2002년 규정에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고, 결과적으로 물리적인 제출방법만이 유효하였음
연간재무보고서의 공개	• 제출된 연간재무보고서는 제반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일반에 공개됨 • 연간재무보고서의 공람을 위해서는 상무부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함	Permen Perdagangan 25/2020 제12조, 제13조

행정적 제재	• 연간재무보고서 미제출 및 기간 도과의 경우 - 서면 경고에서부터 사업허가 취소의 권고 및 사업허가의 취소에 이르는 제재를 받을 수 있음 - 서면 경고는 14일의 간격을 두고, 최대 3회 경고가 행해질 수 있음 - 위 서면 경고 3회 이후, 14일 이내에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, 사업허가 취소의 권고 및 사업허가 취소의 행정적 제재를 받게 됨 • 부정확하고 불완전한 연간재무보고서 제출의 경우 - 서면 경고, 연간재무보고서 제출영수증(STP-LKTP)의 취소에서부터 사업허가 취소의 권고 및 사업허가 취소에 이르는 제재를 받을 수 있음 - 연간재무보고서 제출영수증의 발급이 취소된 경우,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, 사업허가 취소의 권고 및 사업허가 취소에 이르는 행정적 제재를 받게 됨	Permen Perdagangan 25/2020 제14조 내지 제21조
---------------	---	--

평가

연간재무보고서에 관한 2020년의 새로운 상무부 장관령에 따라, 인도네시아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회사는 사업허가정보시스템(SIPT)에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연간재무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다만, Permen Perdagangan 25/2020 제22조에서는 회사의 준비 정도 등 현실을 반영하여 기존과 같이 오프라인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의 유예를 두고 있습니다. 위 기간의 마지막 날은 2020. 9. 19.경이고, 위 시점 이후에는 반드시 온라인으로 제출할 것이 의무화되므로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하는 회사는 위와 같은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.

또한, Permen Perdagangan 25/2020에서는 기존 2002년의 규정과는 달리 인도네시아에 주소를 두고 사업을 하는 외국회사의 연간재무보고서 제출 의무를 보다 명확하게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. 즉, 새로운 규정에 의하면, 외국회사가 인도네시아 현지에 자회사를 설립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, 지사 및 지점의 형태 또는 에이전트를 통하거나 담당자를 주재 및 파견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하는 등의 경우에는 당해 외국회사로 하여금 연간재무보고서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.

Permen Perdagangan 25/2020 규정상 연간재무보고서의 미제출 또는 부실제출 등의 경우에는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고, 의무 위반의 정도가 큰 경우에는 ‘사업허가의 취소’와 같은 제재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,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한국계 기업들의 경우에는 새로운 Permen Perdagangan 25/2020 규정을 잘 숙지하여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.

법무법인(유한) 세종 인도네시아 사무소 소개

인도네시아 법제에 대한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세종 인도네시아 그룹

법무법인(유) 세종의 인도네시아 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이대호 변호사는 인도네시아 UPH(Universitas Pelita Harapan) 대학에서 법학석사(Magister Hukum) 과정을 수강하고, 「인니법-인도네시아 법령 소개서」(도서출판 유로, 2018)를 저술하는 등, 인도네시아 법에 관한 최고의 한국인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. 이대호 변호사는 인도네시아 파견 전에 약 9년간 부동산 투자, 건설, PPP, M&A, 일반 기업자문 등 다양한 분야를 전문적으로 수행한 바 있습니다. 세종이 제휴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로펌인 AKSET(*ARFIDEA KADRI SAHETAPY-ENGEL TISNADISASTRA*)은 인도네시아 일류 로펌의 파트너들이 나와 2010년 설립한 로펌으로서 40여명의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. AKSET은 자원 및 에너지 분야 전문 로펌으로 출발했고, 현재는 일반 기업자문, M&A, 금융, 노동, 소송 등에서도 그 실력과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로펌입니다. 세종의 인도네시아 사무소는 제휴 로펌을 비롯한 인도네시아 최고의 로펌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보유함으로써 고객의 요구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.

주소: Lantai 29 The Plaza Office Tower, Jl. M. H. Thamrin, Kav.28-30, Jakarta 10350, Indonesia

Contact



김두식
대표변호사

☎ +82-2-316-4223
✉ dskim@shinkim.com



길영민
파트너변호사

☎ +84-28-3827-4214
✉ ymgil@shinkim.com



이대호
파트너변호사

☎ +62-877-8392-4470
✉ dholee@shinkim.com

SHIN & KIM

법무법인(유) 세종

법무법인(유)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,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.

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& Kim LLC'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.